

『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사항과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문과 서식을 정비·신설하여 조례를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2조, 제3조)

나.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(안 제7조)

다.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
라.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 삭제

마.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규칙

○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○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상위법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,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적용범위 규모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신설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경상북도로부터 공중화장실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 (경상북도 물산업과-11581호(2019.11.1.)관련)을 받은 바, 상위법과의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